

EY한영 월간 Public Policy Newsletter

2026년 10월호

발행일 | 2026년 10월 23일

In Focus

- + 금융위·기준원, K-IFRS 유형자산 기준서 개정...올해 말 재무제표부터 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주석 공시 의무화 ([바로가기](#))
- + 금융위, '기후금융 활성화 TF' 첫 회의 개최...올해 7월까지 기후금융 42조원 공급해 연간 목표 74.1% 달성 ([바로가기](#))
- + EU, 간소화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확정...기업 보고 부담 완화 ([바로가기](#))
- + EU, 디지털 제품 제조사 사이버보안 규제 본격화...EU 역외 기업도 중대 보안사고 인지하면 24시간 내 보고해야 ([바로가기](#))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01	국내 업데이트	3
	1.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 금융위·기준원, K-IFRS 유형자산 기준서 개정...올해 말 재무제표부터 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주식 공시 의무화	4
	2. 자본시장	
	▪ 금융위, 국가 자금세탁방지 전략 발표...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비금융사업자에도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 도입 검토	5
	3. ESG·지속가능성	
	▪ 금융위, '기후금융 활성화 TF' 첫 회의 개최...올해 7월까지 기후금융 42조원 공급해 연간 목표 74.1% 달성	7
	▪ 기준원,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실증연구 결과 소개	10
	▪ 상장협,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 마련...내년 1월 제도 시행 앞두고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실무 기준 제시	11
	4. 기술·디지털	
	▪ 금융위, 주식·채권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거래 허용...내년 2월부터 단계적 도입	12

02 해외 업데이트 15

1. 해외 일반

- IAASB, 국제감사기준 개정안 공개...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 대응해 '감사증거 판단' 및 '위험 기반 감사' 프레임워크 현대화 16

2. ESG·지속가능성

- EU, 간소화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확정...기업 보고 부담 완화 17
- EU, CBAM 품목 역외 생산자 위한 지침 발행...배출량 산정·보고·검증법 등 설명 19

3. 기술·디지털

- EU, 디지털 제품 제조사 사이버보안 규제 본격화...EU 역외 기업도 중대 보안사고 인지하면 24시간 내 보고해야 20
- EU, 챗GPT·레딧·로블록스에 정기적 위험평가보고 요구...디지털 서비스법상 '초대형 서비스' 지정 22
- EU, 13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전 세계적 아동 SNS 규제 흐름 동참 23

03 주목할 간행물 25

- EY: AI sovereignty in practice - emerging public policy approaches 26

01

국내 업데이트

금융위·기준원, K-IFRS 유형자산 기준서 개정...올해 말 재무제표부터 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주식 공시 의무화 In Focus

9월 23일 금융위원회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주식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함. 같은 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개정 사실을 [공표](#)하고 기준서 개정 문단을 함께 공개함.

개정 기준서에 따라 기업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장부금액과 함께 주식에 공시하고, 해당 금액이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측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재해야 함.

현행

-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간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 실제로 이를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질적 가치 변동을 판단하기 어려움

개정

-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주식에 공시해야 함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가 기업의 자산가치 변동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미 토지의 공시지가를 주식에 공시 중인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과의 비교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 기준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부터 적용됨.

금융위, 국가 자금세탁방지 전략 발표...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비금융사업자에도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 도입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변화하는 위험 환경에 대응하고 2028년 3월에 예정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9월 16일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확산금융¹방지(CPF) 전략 및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함.

배경

- FATF는 회원국의 AML·CFT·CPF 관련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통상 5~6년 주기로 상호평가²하고 있음. FATF 기준 이행이 부진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기준에 따라 추가 검토 및 개선 절차를 거치며, 개선이 충분하지 않고 위험이 중대한 경우 심각성에 따라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년에 실시된 제4차 상호평가에서 일부 제도 정비와 이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매년 추가 점검을 받아야 하는 2등급 국가로 분류된 바 있음.
 - 이후 '24년 10월 제4차 후속점검을 통해 등급이 상향되어 현재는 1등급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이번 전략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 AML·CFT·CPF 제도를 선진화하여 자금세탁 및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다음의 5대 전략하에 12개 이행과제를 마련함.

전략 ①	전략 ②	전략 ③	전략 ④	전략 ⑤
국내 시스템의 FATF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의심거래정보(STR) 분석역량 강화	위험기반접근·감독제도 선진화	범죄수익 환수 촉진을 위한 제도 확대	테러자금조달·확산 금융 범죄 제재 강화

그중 전략 ① 'FATF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에는 4차 평가에서 취약한 것으로 지적받은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³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부과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되며, 이번 12개 이행과제 중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됨.

현재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법인·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의무가 이미 부과되고 있음. 이번 전략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특정비금융사업자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함

² 평가는 여러 회원국의 전문 평가자들이 다른 국가를 평가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으로 이루어짐

³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신탁 및 회사설립전문가,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카지노사업자 등 포함

구체적으로 각 전문 직역별 적용 대상 업무 범위와 전문성, 자금세탁 노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확인, 자료보존 등의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부과 방안 (예시)		
구분	변호사·외국법자문사·회계사·세무사	부동산중개인, 귀금속보석상
대상 거래	부동산 매매, 고객의 계좌자산관리, 법인·신탁의 설립·경영관리 등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부동산중개인: 부동산 매매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 귀금속·보석상: 일정 금액(예: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¹를 하는 경우
적용 의무	법률상 고객확인, 자료보존, 의심거래보고 등 주요 의무를 부과하되, 세부사항은 직역별 협회(예: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준으로 운영	업역 특성(예: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연루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객확인, 자료보존, 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차등 부과

금융위는 정부 합동 상호평가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8개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¹ 연결거래 포함 [일정기간(7일) 이상 동안의 거래 합계가 1천만원 초과 시]

금융위, '기후금융 활성화 TF' 첫 회의 개최...올해 7월까지 기후금융 42조원 공급해 연간 목표 74.1% 달성 In Focus

9월 14일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전환금융의 안정적 도입과 시장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융위]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 실적 발표

- 추진 실적: '26~'35년 사이 5개 정책금융기관¹이 공급을 계획했던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중, '26년 7월까지 총 42조원의 기후금융이 공급됨
 - 연간 목표(56조 7000억원)의 74.1%, 7월 누계 목표(33조 1000억원)의 127% 달성
- 향후 계획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지원사례를 지속 발굴·확산
 -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실무 모범규준,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및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금융회사의 관련 상품 개발과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공급 지원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전환투자 지원사업 운영 방향 발표

- 정부 예산을 활용한 '27년 재정지원사업² 운영 방향 발표
 - 지원 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K 택소노미')³와 기업의 전환전략에 부합하는 녹색·전환투자
 - 지원 내용: 채권·대출의 이차비용 및 보증 지원을 통한 녹색·전환투자에 대한 민간 자금공급 유도 (예: ▲대규모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채권 이차보전⁴ 확대 ▲감축효과에 따른 녹색·전환대출 우대금리 차등 지원)
- 향후 계획: EU·싱가포르 등 주요국 택소노미와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K 택소노미' 적합 매출액·투자액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공개할 수 있게 지원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² '27년 정부안 기준 총 7373억원 규모이며, '26년 예산안은 6204억원임

³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

⁴ 채권 발행에 따른 이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산업부]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 추진 현황 공유

-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 계획:**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¹를 반영한 5개 탄소 다배출 업종별 녹색전환 경로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공유
 - 5개 탄소 다배출 업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전자조립
- **향후 계획:** 산업계·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종별 로드맵 최종안을 수립·발표하고, 해당 로드맵을 전환금융 공급기준과 연계할 계획

[금융원] 전환금융 실무 TF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운영 경과:** 올해 2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3월부터 금융권과 함께 '전환금융 실무 TF'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무 기준 등을 보강하고, 전환금융 취급을 위한 실무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함
- **향후 계획**
 - 금융권 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0월 말까지 전환금융 취급을 위한 실무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파일럿 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
 - 금융회사가 기업의 전환금융 심사 시 산업부가 마련할 예정인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올해 말까지 검토·협의할 예정

[신용정보원]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사업 추진 현황 공유

- **추진 경과:**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 후, 올해 5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8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함
 - **추진 배경:**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해 K 탄소노미 적합성 판단을 해야 하나,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함 (예: ▲탄소노미 충족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의 환경 기술정보 확보가 어려워 기준 미달임에도 적합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기후금융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이 그린워싱을 할 우려가 있음)
 - **주요 기능:** 금융기관·외부검토포기²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후금융 지원 후보 기업 발굴부터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까지 기후금융 취급 전 과정을 지원
- **향후 계획**
 - K 탄소노미 추천 기능³ 강화 등 웹포털 기능 고도화, 은행 외에도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 은행권 기후금융 실적과 K 탄소노미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웹포털 내 통계정보를 제공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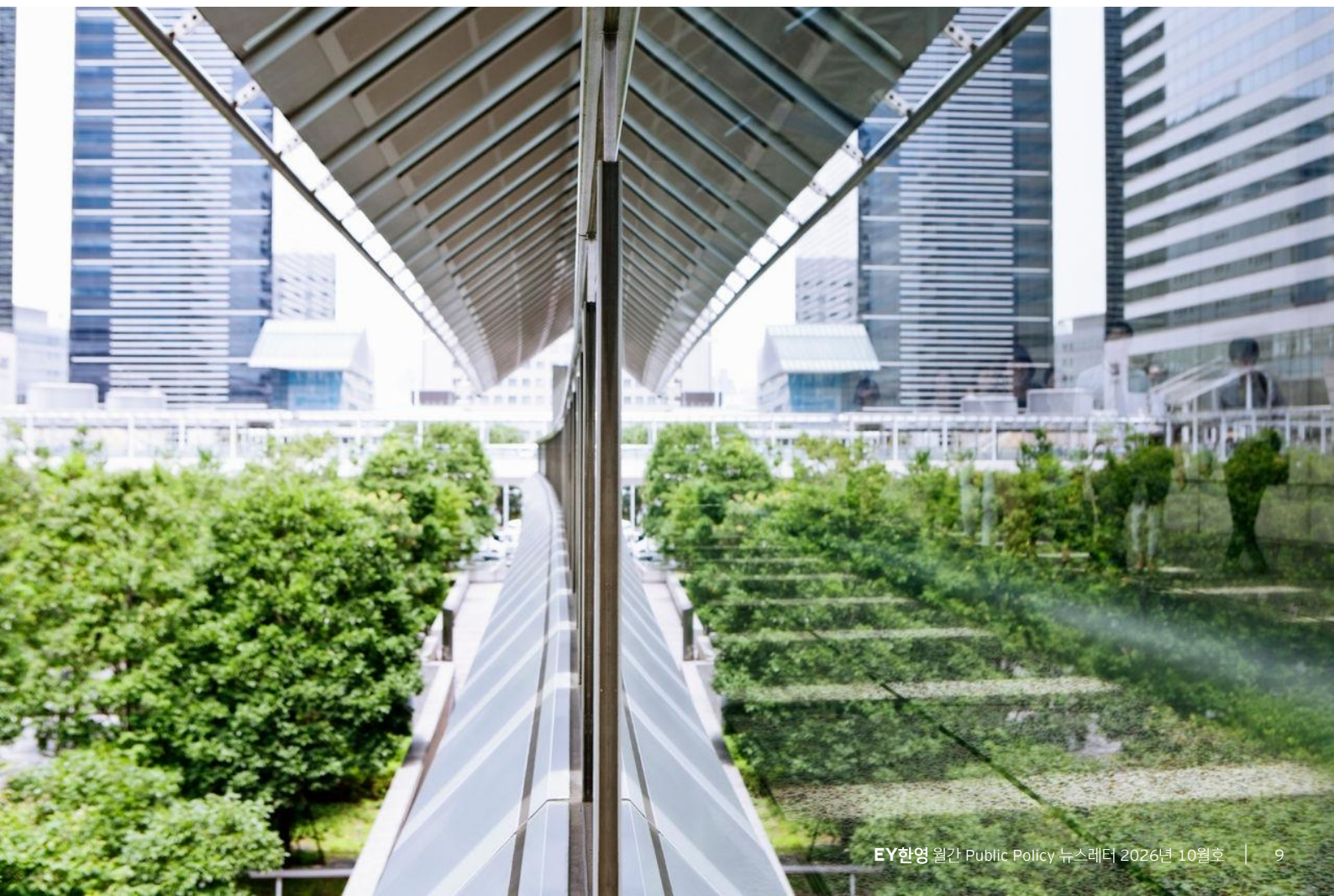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해 발표함

²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한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포기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³ 이용자가 키워드 입력 시 매칭 가능성이 높은 경제활동을 추천

금융위는 향후 '기후금융 관계기관 TF'를 통해 기후금융 정책 추진 상황과 금융권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후속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지속가능성 공시와 전환금융의 연계 등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기준원,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실증연구 결과 소개

9월 3일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원 27주년을 맞아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최중경 IFRS 재단 이사 등의 축사와 기조연설에 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석현 홍콩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 외에도 주성호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은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시기준 제정 경과 및 이행 지원 계획을 소개했으며,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근거 마련 등을 제시함. 이후 토론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준비를 위한 향후 과제가 논의됨.

기준원은 KSSB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소통과 이행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ISSB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 및 자본시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임.

상장협,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 마련...내년 1월 제도 시행 앞두고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실무 기준 제시

2027년 1월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9월 1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발표](#)함. 상장협은 이번 매뉴얼의 발간 목적이 회사별 운영 기준 차이로 인한 혼란과 법률적 위험을 줄이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개최 요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함.

배경

- '25년 7월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27년 1월 1일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해야 하며, 210여 개사의 상장회사가 내년도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실시해야 함. (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총회의무' 도입하고 '3% 룰' 강화" 참고)
- 현재 상법 및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요건, 운영 기준, 본인확인 방법 등 세부 사항 대부분을 법무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상장협은 관련 세부 기준이 마련되기에 앞서 상장회사가 참고할 실무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매뉴얼은 회사법 분야 전문가인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함. 주요 내용은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해석 ▲준비 단계의 일반 원칙 ▲출석·본인확인 및 의결권 행사 운영 기준 ▲총회 당일 운영 및 기술 요건에 관한 공정성 강화 조치 ▲통신장애 등 비상 상황 대응 기준 ▲기록의 보존·비치 및 열람 기준 등 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함.

상장협은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운영 기준, 소집 통지문 등 각종 양식과 운영 관련 Q&A를 별첨으로 수록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고 밝힘.

다만 이번 매뉴얼은 권장 기준(best practice)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향후 정부의 세부 기준이 발표될 경우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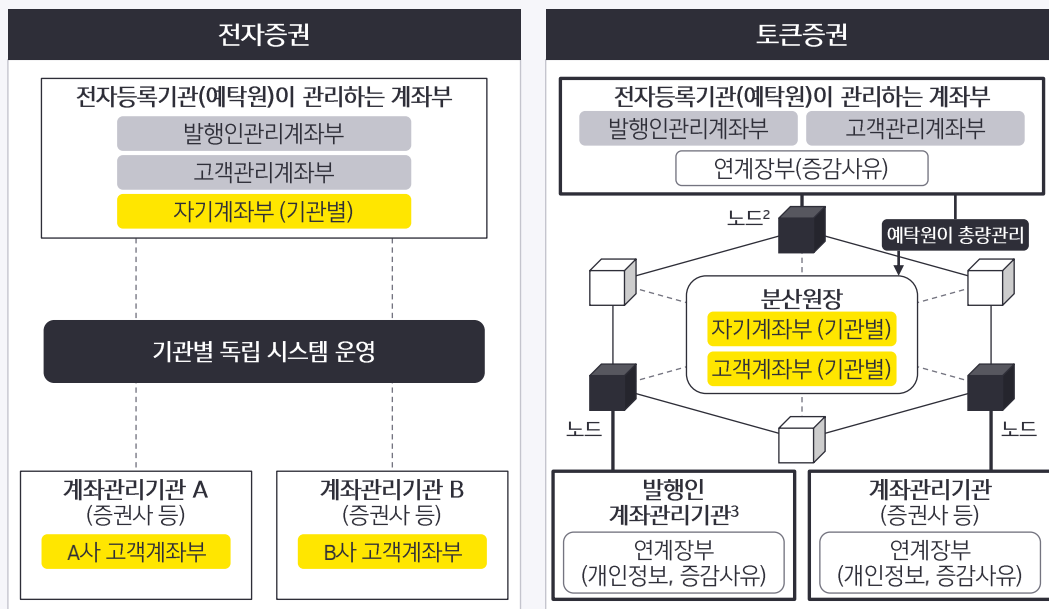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번 매뉴얼이 회원사들의 제도 시행 사전 준비와 향후 정부 세부 기준 마련 논의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무부·한국예탁결제원과 '시범전자주주총회'를 시연하고 교육·연수 및 후속 실무 자료 발간 등을 통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매뉴얼은 상장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사에 배포됨.

금융위, 주식·채권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거래 허용...내년 2월부터 단계적 도입

내년 2월부터 부동산·음원 등의 소유권을 쪼개서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하는 방식인 '조각투자'의 토큰화와 함께,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단계적으로 토큰 방식의 발행과 거래가 허용될 예정임.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발표함.

배경

- '26년 2월 토큰증권을 도입하기 위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국회, '토큰증권' 도입 위한 개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참고)
- 토큰증권은 발행과 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 분산원장¹에 기재·관리하는 증권을 말함.
 - 증권의 '내용'이 아닌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증권을 종이 증서 형태로 발행하면 **실물증권**, 전자계좌에 기록하면 **전자증권**,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토큰증권**이 됨.
 -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은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계좌부를 작성하며 전자증권법상 관리체계를 따르는 점은 동일하나,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인 증권계좌부를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음.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의 증권계좌부 관리 체계 차이>

토큰증권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거래정보를 하나의 중앙시스템(예: 단일 은행이나 증권사의 독립적 전산시스템)이 아닌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장부 기술.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되므로, 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사후에 변경하기 어려움.

² 분산원장에 참여하는 전산시스템

³ 기존에는 증권사·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만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공동 기재·관리 특성 등을 고려해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함.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

- 신증·비정형 증권인 조각투자(기초자산 및 사업에 다수가 나누어 투자)와 기존·정형 증권인 주식·채권·펀드 등의 토큰화를 함께 추진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맞는 신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개발 부담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마련

구분	[1단계] '27.2월 개정법 시행	[2단계]	[3단계]
기존 정형 증권	■ 펀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토큰화 ■ 채권: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토큰화 ■ 주식: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토큰화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시장수요를 점검하면서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 확충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on-chain) ¹ 결제 인프라 구축
신증 비정형 증권	■ 조각투자: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 시스템 구축에 용이 - 단,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기초자산의 적격성 등 관련 별도 모범규준 적용		

조각투자 모범규준 수립

- 조각투자 유형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신탁이 가능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기존의 신탁제도 활용
 - 투자계약증권: 신탁이라는 매개수단 없이 직접 공동사업의 손익 배분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을 통해 혁신적 상품 개발 지원 및 투자자 보호 기반 마련
 -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²
 - 불확실사건(예: 장래매출채권) 연계 기초자산도 일정 조건 충족 시 허용³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모절차 등 원칙 제시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개별심사를 실시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특정 유형의 증권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진행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메인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닌 그 외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인 오프체인(off-chain)과 대비됨

² 동일 종류, 집합화 기준·목적의 명확성, 부실자산 포함 금지, 개별자산의 구분 정보 제공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 가능

³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허용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 접목

-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예: 증권업, 장외거래소) 획득 시, 인가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 취급 가능
- 장외거래소 관련 일반투자자 거래한도(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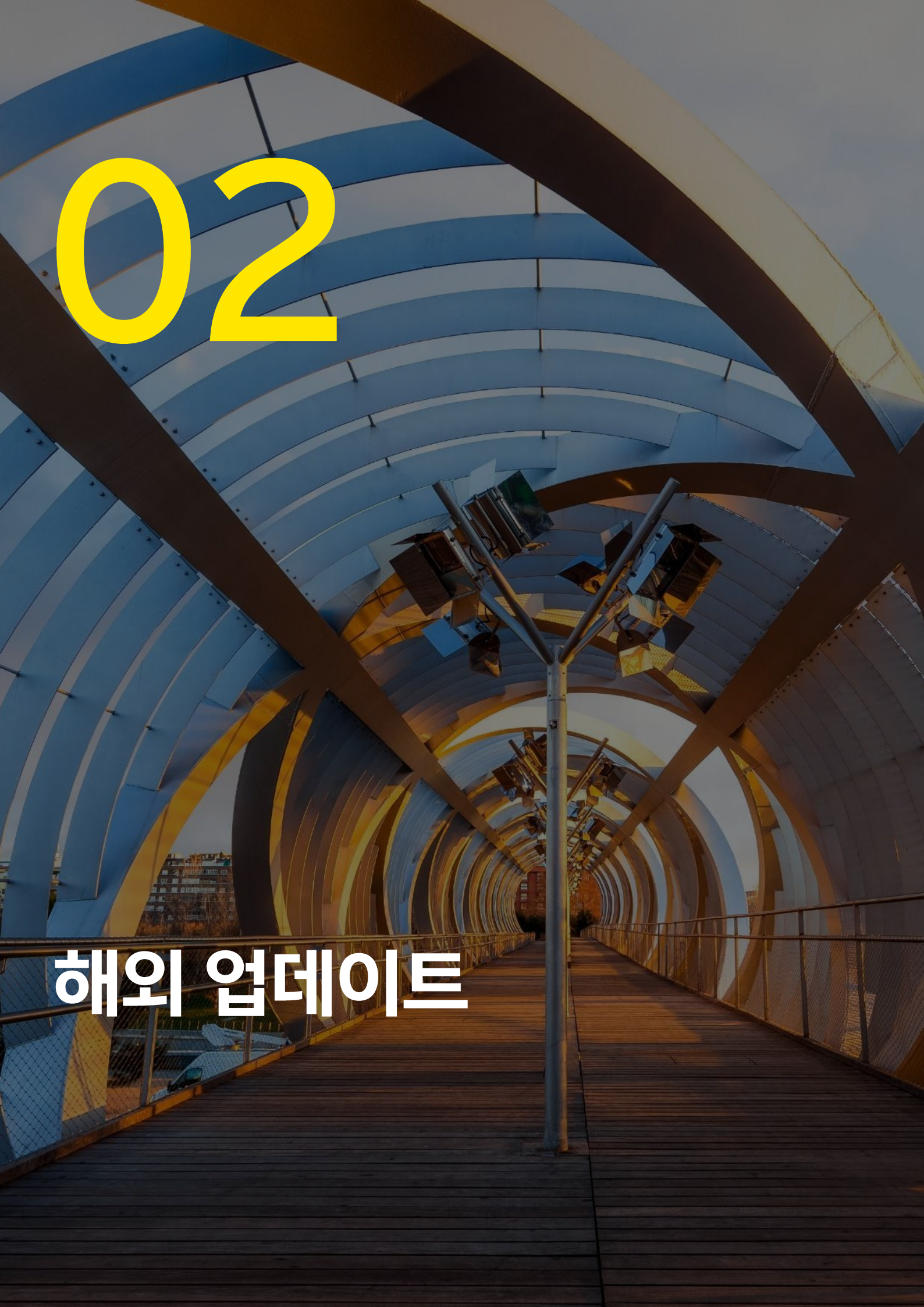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게 허용
 - 등록 요건: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구비 등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 증권사 등이 토큰증권 분산원장 연계를 신청하면, 예탁원이 참여자,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등에 대한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심사 및 기능 테스트를 수행

이번 토큰증권 정책 방향 중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은 토큰증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임.



02

해외 업데이트

IAASB, 국제감사기준 개정안 공개...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 대응해 '감사증거 판단' 및 '위험 기반 감사' 프레임워크 현대화

8월 5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위험 기반 감사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3개 핵심 국제감사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Auditing, ISA)의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함. 이번 개정은 '감사증거 및 위험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개정 대상 기준서는 다음과 같음.

- ISA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The Auditor's Responses to Assessed Risks)'
- ISA 500 '감사증거(Audit Evidence)'
- ISA 520 '분석적절차>Analytical Procedures)

배경

- IAASB는 지난 10여 년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감사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감사기준의 현대화를 추진해 왔음.
- 급격한 기술 발전과 감사환경의 변화로 감사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성격, 그러한 정보가 생성·입수되는 방식 등이 크게 변화함. 이에 따라 '24년 12월 IAASB는 3개 국제감사기준의 동시 개정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함.
- 이번 개정안은 일관성 있고 높은 품질의 감사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 중심·위험 기반 감사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재무 보고 및 기술 환경에서 급속하게 변하는 디지털 혁신을 반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됨.

ISA 500은 감사증거의 충분성·적합성 판단기준(reference framework)을, ISA 330 및 520은 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과 관련된 기준을 다루고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감사증거 판단을 위한 포괄적 체계 마련 ▪ 기준서 간 원칙과 개념의 정합성을 제고해 일관성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 강화 ▪ 감사증거 입수·평가 시와 중요왜곡표시위험(ROMM)에 대한 대응 시에 유지해야 할 전문가적 의구심 강화
3. 중요왜곡표시 발견을 위한 감사절차 설계 강화 ▪ 효과적인 실증절차의 기반이 되는 원칙 명확화 ▪ 세부테스트 및 실증적 분석절차의 정의 및 적용기준을 정비하여, 중요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감사절차의 설계 및 수행을 지원	4.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업무 명확화 ▪ 통제테스트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제 기반 접근법의 적용을 촉진
5. 기술 발전을 감사기준에 반영 ▪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원칙 중심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화	

IAASB는 2026년 12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임.

EU, 간소화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확정...기업 보고 부담 완화

In Focus

9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규제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Omnibus) I 패키지'에 따른 개정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과 소규모 협력사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최종본을 공표함. (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EU 집행위, 간소화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공식 채택 앞뒀" 참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ESRS' 개정

- 기준서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 데이터 포인트 축소: 기존 ESRS 대비 필수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¹ 개수를 60% 이상, 전체 데이터 포인트 개수를 70% 이상 줄임
- 기업별로 무엇을 보고할 것인가?
 - 중요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 간소화: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성 평가에 하향식(top-down) 접근방식을 허용함. 즉, 해당 기업이 속한 섹터,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전략·사업모델 등의 큰 틀에서 볼 때 특정한 ESG 이슈가 중요성을 가지는지 아닌지 명확하다면 추가적인 세부 평가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이슈와 관련된 영향·위험·기회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중요성을 판단하도록 함.
- 어떻게 충실하게 보여줄 것인가?
 - 공정한 표시(fair presentation) 원칙 명시: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위험·기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왜곡 없이 충실하고 균형 있게 표현해야 하며, 특히 개별 데이터 포인트 차원이 아니라 보고서 전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기업의 중요한 영향·위험·기회를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고려해야 함.
- 보고부담이 어떻게 완화되는가?
 - 가치사슬 관련 지표 작성 시 실행 가능성과 데이터 신뢰성 등을 고려해 추정치 또는 가치사슬 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 중요 영향·위험·기회 식별, 가치사슬 관련 정보 및 지표 작성,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보고 등에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지표의 보고범위(reporting boundary)² 일부에 대해서만 보고할 수 있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보고서 양식에서 하나의 칸(cell)에 들어가는 값 1개

² 지속가능성 정보를 산정·보고할 때 포함되는 기업·사업활동 등의 범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비적용 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

- 기준 구성: '기본 모듈(Basic Module)'과 '종합 모듈(Comprehensive Module)'로 구성됨.
 - 기본 모듈: 가치사슬 내 거래기업(대기업 등)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핵심 지속가능성 지표에 중점을 둔 기본 보고 체계
 - 종합 모듈: 기본 모듈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모듈로, 은행, 투자자 및 가치사슬 내 거래기업의 추가적인 정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보고 체계
- 가치사슬 상한(Value Chain Cap) 설정: CSRD 적용 대상 기업이 가치사슬 내 협력사 정보를 수집할 때 전년도 평균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인 협력사에는 부속서 II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음
 - 상한을 초과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상한을 초과하는지 ▲협력사가 해당 정보 제공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함

개정 ESRS는 11월 10일 발효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은 9월 24일 이미 발효되었으며, 가치사슬 상한 설정 조항은 개정 ESRS와 동일한 시점부터 적용됨.

¹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중 정보 요구 상한에 포함되는 필수 데이터 포인트를 명시한 목록으로, 종업원 수 10명 이하와 10명 초과 기업을 구분해 정보 항목을 정함

EU, CBAM 품목 역외 생산자 위한 지침 발행...배출량 산정·보고·검증법 등 설명

올해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등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들이 마련됨. EU 집행위원회는 시멘트 등 CBAM 규제 대상 품목의 생산설비를 EU 밖에서 운영하는 'EU 역외 생산설비 운영자'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지침서를 8월 14일 [발표](#)함. 같은 달 24일에는 배출량 검증기관과 공인 검증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를 위한 지침서가 이어서 [발간](#)됨.

배경

- '26년 1월부터 EU 역외에서 생산된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¹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부여됨. (본 뉴스레터 2026년 5월호 "EU, 'CBAM 인증서' 가격 첫 공개... '26년 1분기 수입품 탄소 비용은 톤당 약 13만원" 및 2026년 6월호 "EU, 수입품 탄소비용에서 'EU 역외 기지불 비용 공제' 기준 구체화" 참고)
 - 수입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품에 대한 인증서를 구매해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인증서 수량은 EU 배출권거래제(ETS) 무상할당분과 EU 역외 국가에서 기부담한 탄소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됨.
- CBAM 신고서 및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는 수입업자에게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이 거래가격 등을 통해 공급망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내재배출량 산정 시 EU가 정한 기본값(default value)이 아닌 실제배출량 정보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², EU 역외 생산설비 운영자가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함.

역외 생산설비 운영자를 위한 지침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지침 1. CBAM 제도 개괄	▪ CBAM 관련 기본 개념과 EU 역외 생산설비 운영자의 역할 및 책임 등을 개괄함
지침 2. EU 역외 생산설비 운영자를 위한 요약 가이드	▪ EU 역외 생산설비 운영자를 위해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배출량 정보 제공 방법, 검증 의무 등을 간략하게 설명함
지침 3. 내재배출량 산출	▪ 구체적인 내재배출량 산출 방법과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함
지침 4. 무상할당분 반영	▪ EU 역외 생산설비 운영자가 EU ETS상 무상할당분을 산정해야 하는 의무 ³ 와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함
지침 5. 품목별 지침	▪ CBAM이 적용되는 시멘트 , 수소 , 비료 , 철강 , 알루미늄 , 전력 각 품목별 생산공정 및 가치사슬과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배출량 산출 예시를 제시함

CBAM 검증기관 및 인정기구를 위해 발행된 [지침서](#)는 역외 생산설비 배출량 검증을 위한 원칙 및 절차, 검증기관 자격요건과 인정 절차 등을 설명함. 우리나라 검증기관들은 직접 인정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정을 받은 해외 검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 발행된 CBAM 관련 모든 규정과 지침은 공식 CBA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¹ 해당 제품 생산 시 배출된 탄소 총량으로,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함.

² EU가 발간한 CBAM 관련 [Q&A](#)에 따르면, 기본값에는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산정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가산율(mark-up)이 적용됨. 따라서 실제 배출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값보다 실제값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³ 자신의 설비가 EU 내 위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생산공정에 대해 받을 수 있었을 배출권 무상할당분을 산정해야 함. 예를 들어 EU 시멘트 회사들은 아직 배출권 무상 할당을 일부 받고 있는데, 수입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산 시멘트에 EU산 시멘트보다 더 큰 탄소비용을 부과하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위의 가정에서 한국산 시멘트가 배당받을 수 있었을 무상할당분을 CBAM 탄소비용에서 경감시키기 위함.

EU, 디지털 제품 제조사 사이버보안 규제 본격화...EU 역외 기업도 중대 보안사고 인지하면 24시간 내 보고해야 In Focus

EU 시장에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은 9월 11일부터 자사 제품의 취약점이 악용됐거나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24시간 내 EU 감독당국에 최초 보고하고 72시간 내 시정조치 내역을 포함한 본 보고를 이행해야 함. 이러한 보고의무는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CRA)에 따른 것으로, 2027년 12월 11일부터는 그 밖의 모든 사이버보안 의무도 함께 준수해야 함.

사이버복원력법(CRA)이란?

- CRA는 EU 시장에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가 제품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스마트 기기, IoT 제품, 모바일 앱,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른 기기나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며,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도 준수 의무가 있음.
 - 제품이 모든 CRA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만 EU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데, 품목 대부분은 제조업체가 부합 여부를 자체 평가할 수 있으나 사이버보안상 중요한 일부 품목(예: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EU가 인정하는 기술표준을 적용해 자체 평가하거나 공인된 제3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 CRA는 '24년 12월 발효되었으나,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

CRA상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음.

1. '26.9.11.부터: 보고 의무

- 취약점이 실제로 악용되었거나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당국에 보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조기경보 통지	인지 후 72시간 이내 취약점 통지	시정·완화 조치가 마련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최종 보고서
취약점 악용 사례 발생	■ 실제로 악용되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 ■ 해당 제품이 공급된 EU 회원국	■ 해당 제품에 대한 일반적 정보 ■ 악용 행위 및 취약점의 성격 ■ 제조사가 취한 시정·완화 조치 ■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취약점 관련 설명(심각도·영향 등) ■ 악의적 행위자 관련 정보 ■ 제조사가 실시한 보안 업데이트 또는 기타 조치 세부 내용
	인지 후 24시간 이내 조기경보 통지	인지 후 72시간 이내 사고 통지	사고 통지 후 1개월 이내 최종 보고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사실 ■ 불법적·악의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의심되는지 여부 ■ 해당 제품이 공급된 EU 회원국	■ 사고 성격에 대한 일반적 정보 ■ 사고에 대한 초기 평가 ■ 제조사가 취한 시정·완화 조치 ■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사고 관련 설명(심각도·영향 등) ■ 사고를 촉발한 위협의 유형 또는 근본 원인 ■ 제조사가 실시했거나 진행 중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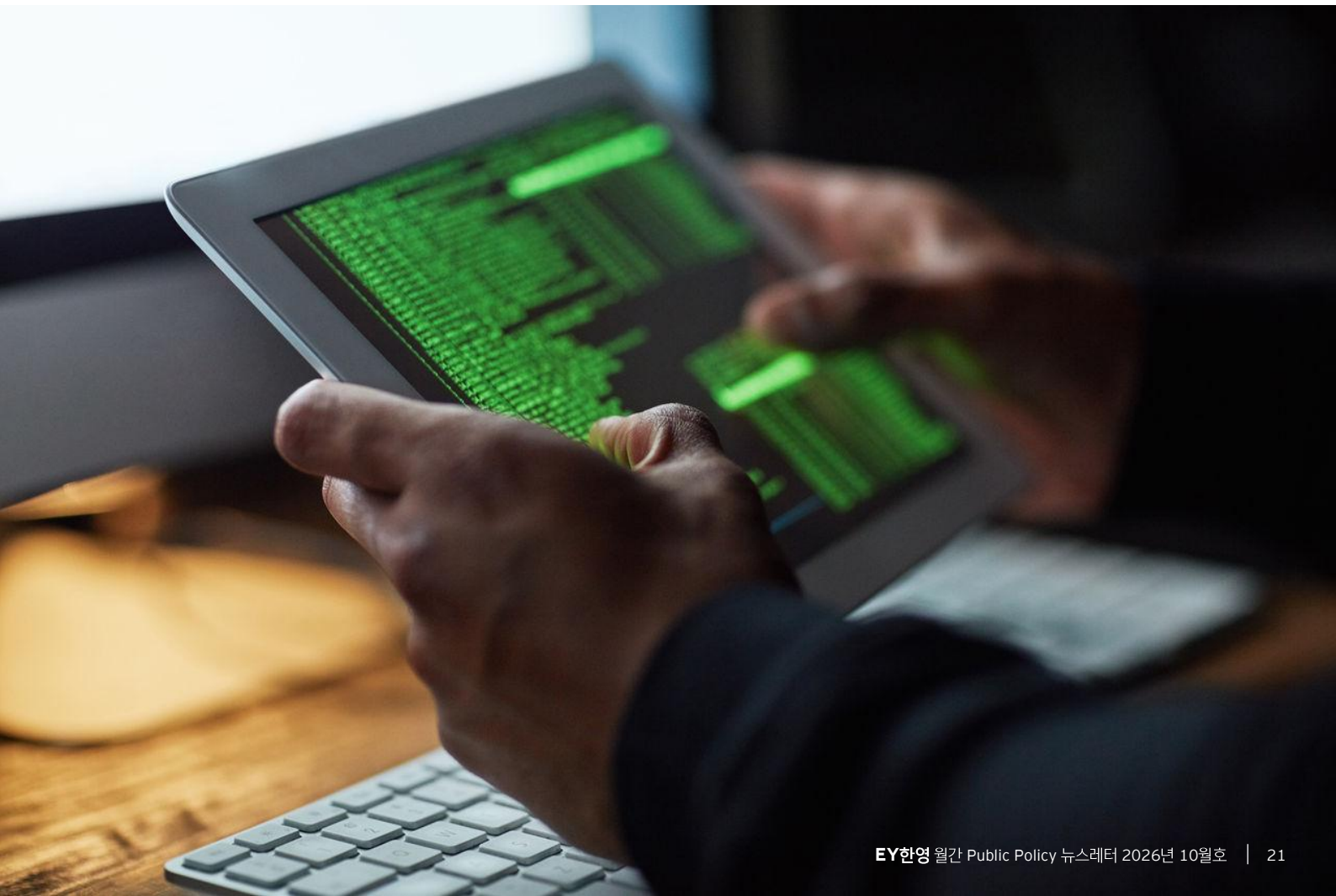
» 다음 페이지에 계속

2. '27.12.11.부터: 주요 사이버보안 의무

- 제품 설계·개발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내재화: 안전한 기본값 설정, 암호화, 접근통제 메커니즘 등
- 위험 평가 및 완화조치 시행: 제품 위험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품의 설계·개발·생산·유지보수 등에 반영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취약점을 파악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 투명성 의무: ▲사이버보안 기능 ▲안전한 설치, 설정 및 사용방법 ▲취약점 발견 시 사용자가 제조업체에 신고하는 방법 ▲CRA 요구사항에 모두 부합한다는 내용의 적합성 선언 등을 문서화

또한 제품의 예상 사용기간을 반영한 지원 기간 동안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함.

제조업체가 사이버보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00만 유로(약 225억원)와 글로벌 연매출의 2.5%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또한 시장 출시를 제한·금지하거나,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 회수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리콜 명령도 가능함.



EU, 챗GPT·레딧·로블록스에 정기적 위험평가·보고 요구...디지털 서비스법상 '초대형 서비스' 지정

8월 31일 EU 집행위원회가 챗GPT,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를 디지털서비스법(DSA)¹에 따라 가장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 및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

배경

- '22년 11월 디지털서비스법 발효 이후, EU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의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해 왔음.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초대형 플랫폼의 위험평가감사 보고서 최초 공개 안내" 및 2026년 3월호 "EU, 챗GPT '초대형 플랫폼·검색엔진' 지정 추진...AI법에 더해 디지털서비스법으로도 규제 방침" 참고)
- 챗GPT, 레딧, 로블록스는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지정 기준인 4500만 명 이상이라고 신고했으며, 집행위는 다음과 같은 각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각각 VLOSE와 VLOP로 지정함.
 - 챗GPT (VLOSE): 이용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웹 검색도 수행하는 AI 기반 하이브리드 서비스
 - 레딧, 로블록스 (VLOP): 각각 토론과 게임 중심의 서비스로, 이용자가 이들 서비스를 통해 제3자 콘텐츠를 대중에게 유포할 수 있음
- 이들 3개 서비스에는 지정 이전부터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s)²가 적용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VLOP/VLOSE에 대한 추가 의무가 더해짐.

이번 지정에 따라 챗GPT, 레딧, 로블록스는 DSA상 VLOP 및 VLOSE에 적용되는 추가 의무를 2027년 1월까지 이행해야 함.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음.

플랫폼 구조로 인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평가·완화

- 대상 위험 유형: 해당 서비스나 알고리즘으로 인한 ▲불법 콘텐츠 확산 ▲미성년자, 이용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기본권, 선거 절차 및 공공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함.
- 평가 주기: 최소 연 1회 실시해야 하며, 위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기 전에도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함.
- 보고·공개: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관련 보고서를 EU 집행위와 본사 또는 유럽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관할당국에 제출하고 매년 공개해야 함

VLOP 및 VLOSE는 또한 DSA 의무 준수 전반에 대해 최소 연 1회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함. EU 집행위의 직접 감독 대상이 되며, 의무 미이행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¹ EU 내 모든 온라인 플랫폼(소셜미디어, 마켓플레이스 등)이 불법 콘텐츠·유해 알고리즘·온라인 광고·사용자 보호 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든 온라인 안전·책임 규제법

²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신고·조치, 투명성, 이용자 보호 등 기본 의무

EU, 13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전 세계적 아동 SNS 규제 흐름 동참

EU가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입법에 본격 착수함.

9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SNS 연령 제한을 도입하고, SNS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설계 단계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EU 키즈법안(EU Keeping Internet Digital Spaces Accountable and Trustworthy, KIDS Act)'을 [발표](#)함. 법안은 EU 의회 및 이사회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수정·채택할 예정임.

주요국 SNS 규제 현황

- 아동의 온라인 안전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호주는 '25년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모든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함.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EU 등 전 세계적으로 SNS 연령 제한 도입 움직임 확산" 참고)
- 이후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성년자의 디지털 접근 제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
 - 영국은 이르면 '27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온라인 서비스 내 아동에게 유해한 특정 기능에 대한 제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임. (본 뉴스레터 2026년 7월호 "영국,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이르면 '27년 시행...SNS 아닌 서비스도 유해 기능은 별도 규제" 참고)
 -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6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개설·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스마트 기기, 앱스토어 등 앱 배포 플랫폼에 '미성년자 모드'를 도입해 이용시간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음.

EU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SNS 연령 제한

13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3~14세 미니 계정(mini account)	15세 이상 독립 계정 개설 가능
▪ SNS 계정 개설·이용 불가	▪ 보호자 계정을 통해서만 '미니 계정' 개설 가능 → 보호자가 이용 시간, 연락 상대 등 제한	▪ 본인 명의 계정 개설 가능

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서비스들은 인증된 수단을 활용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기존 계정도 규정 적용 후 6개월 이내에 연령을 확인해 15세 미만 계정은 비활성화해야 함.

또한 앱스토어는 모든 앱에 연령등급을 부여하고, 아동이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앱에 접근하거나 구매하지 못하게 해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2.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보장(safety-by-design)' 의무화

- 적용 대상: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SNS, 동영상 공유, 온라인 게임, AI 컴패니언 (companion)¹ 및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주요 의무
 - 중독적 설계 금지: ▲이용자가 페이지 하단에 도달하면 새 데이터가 자동으로 로딩되는 '무한 스크롤' ▲재접속을 유도하기 위한 알림 ▲불특정 다수 대상 콘텐츠 게시를 유도하는 보상 등 금지
 - 추천 시스템 변경: ▲이용자 행동에 기반한 개인화 기능은 기본 설정값으로 비활성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유해 콘텐츠에 연속 노출되는 현상 방지 등 의무화
 - 낯선 사람의 접근 제한 기능: 사전 승인 없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동의 없이 그룹에 추가하는 등 일방적 접근을 방지하는 기능 의무화
 - AI 컴패니언 및 챗봇 관련 보호조치: 정서적 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보호조치 의무화

이와 더불어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해당하는 업체는 자사 서비스가 안전성 보장 규정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초대형 플랫폼의 위험평가감사 보고서 최초 공개 안내" 참고) 즉, 새로운 서비스, 기능 등을 도입할 때 EU 집행위와 독립적인 감사인에게 의무 준수 계획을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집행위는 감사보고서에 기반해 계획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법안들을 중심으로 가입 연령 제한, 부모 동의, 알고리즘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¹ 반복적·지속적 대화를 통해 인간과 친구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AI 시스템을 뜻함.

03

주목할 간행물



EY: AI sovereignty in practice - emerging public policy approaches



EY가 각국 정부가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어떤 정책적 선택을 통해 'AI 주권(AI sovereignty)'을 구현하고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AI 주권을 “정부 또는 기업이 데이터, 인프라, 거버넌스 등 핵심 AI 역량에 대해 실질적인 주도권 또는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안보 강화, 국내 역량 구축·보호, 선택권 확대, 경제적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각국의 관련 정책 동향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AI 가치사슬의 핵심 영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해외 기업과 국가 간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됨.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하기보다 어떤 의존성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완화할지 절충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AI 주권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기술 접근성과 장기적 역량 구축 ▲통제력 확보와 규모의 경제 ▲특정 분야 전문화와 범용 역량 확보 사이의 균형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함. 또한 자유무역 기반의 개방형 모델부터 국내 AI 인프라 구축을 중시하는 자립형 모델까지 다양한 정책 접근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정책 목표와 산업 특성에 따라 여러 방식을 혼합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보고서는 정책입안자가 AI 가치사슬 전반의 의존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위험요인과 성장 목표에 맞춰 정책 개입을 설계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함. 아울러 기업은 국가별 AI 정책 및 규제 요구사항 변화에 대응하고 의존 관계를 모니터링하면서 시장별로 운영모형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담당자 안내

EY한영 Public Policy팀

이동근 부문대표 (파트너)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 Public Policy 리더

dongguen.lee@kr.ey.com

Public Policy 뉴스레터 편집팀: 김양희 팀장, 권혜숙 부장, 강태은 차장, 김채원 직원

EY한영 ESG Impact Hub

박재흠 파트너

EY한영 ESG Impact Hub 리더, 감사부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리더

jaeheum.park@kr.ey.com

뉴스레터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품질관리실 회계기준 김동길 파트너 품질관리실 감사기준 및 제도 정연웅 파트너

I 제작 EY한영 Public Policy 팀 (ey.pp.team@kr.ey.com)

I 뉴스레터 구독 신청 담당 EY 파트너 문의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